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9가단8556 판결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

전 문

원 고 1. A

2. B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 2020. 4. 17

판결 선고 2020. 5.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를인도하고,나. 각 원고에게 13,942,16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갠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9. 5. 20.부터 위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468,1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1. 25. 이 법원 E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1항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매각 받아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 전인 2011. 11. 23.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건 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을 신축하여 2016. 2.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 및 소유권취 득일로부터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2016가단151107호)을 제기하여, 2018. 1. 12.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항소심(이 법원 2018나32034호)에서 2018. 8.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1.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대금 2억 4천만 원에 매도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10. 31.까지 위 대금 2억 4천만 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위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2016. 11. 25.자 접수 제79586호 근저당권은 원고들이 변 제하고 말소한다. 라. 위 가, 나, 다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위대지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융자를 받을 수있도록 최대한 협조 한다. 3.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에 설정된 2016. 11. 25.자 접수 제79586호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무를 변제하고 2019. 2. 19. 그 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오 내지 3, 5, 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 확정 이후 피고에게 수차례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의송달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대지의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지급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후소인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은 전소인 이 법원 2018나32034호 사건과 동일하다 할 것인 이상,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대지의 인도및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를 포기하는 전소 부분의 기판력이 미친다 할 것이어서이 사건에서는 위 전소 부분의 기판력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원고들의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조미옥

별지